

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수급 및 신진대사를 촉진키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
- 근무상환 연령단축, 정년연장 신청규정 삭제, 직권면직에 따른 근무기간 및 휴직 제도의 개선 보완을 명시한 것으로
- 경상남도 표준안(총무 12100-1107, '98.9.25)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고성군 별정직 공무원 수는
- 답 : 5급 1명, 6급 17명, 7급 4명, 8급 7명으로 총 29명임.
- 문 : 안 제10조4호의 "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" 직권면직 규정이 단체장의 남용우려는
- 답 : 상위법 및 표준안에도 명시되어 있고, 인사위원회 절차를 경유하므로 남용 우려는 없음.

#### 6. 토 론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- 1998. 11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